#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9

발의연월일: 2020. 12. 11.

발 의 자:민홍철·김민철·이상직

설 훈・노웅래・이개호

위성곤 · 김정호 · 윤재갑

서삼석 · 서영교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등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운전을 교습하는 중장비학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의 예시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중장비 학원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6 조).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중장비운전학원용 토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	2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나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	
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중장비운전학원용 토지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	
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	
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	
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